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3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정춘생 · 황명선
이해민 · 정준호 · 박희승
이학영 · 서삼석 · 황운하
손명수 · 서왕진 · 신장식
차규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.

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,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3항).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군보건의료인의 확보) ①</p> <p>· ② (생 략)</p> <p>③ <u>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군보건의료인의 확보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